

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형)」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	개정 2023년 10월 12일	개정일자 반영
<p>제 29 조(관할법원)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제 29 조(관할법원) ①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금소법 개정신설 제7장 제66조의2 (전속관할) 관련 내용 약관반영</p>
〈추가〉	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 추가